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8.

발 의 자 : 이헌승 · 박덕흠 · 김선교
이성권 · 김상훈 · 최형두
엄태영 · 서명옥 · 박성훈
김정재 · 송석준 · 김재섭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,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.

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,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 · 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, 사실의 확정 · 위법성 판단 ·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 신설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에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심사에 대한 보고서(이하 “심사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59조에 따른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사실의 인정
2.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
3. 과징금의 산정 근거 및 가중 감경 요소
4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⑫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하되,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제외한다. 다만,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송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자료
2.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

3.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

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다음”을 “제81조제1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 ① ~ ⑩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1조(위반행위의 조사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<u>⑪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심사에 대한 보고서(이하 “심사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59조에 따른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.</u> <u>1. 사실의 인정</u> <u>2.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</u> <u>3. 과징금의 산정 근거 및 가중 감경 요소</u> <u>4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<u>⑫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하되,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제외한다. 다만,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제95조(자료열람요구 등)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

해당하는 자료는 제3항에도 불
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송
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자료

2.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

3.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 료

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보고서
의 작성, 제출 및 송부 등에 필
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
정하여 고시한다.

제95조(자료열람요구 등) -----

-----제81조제13항-----

<작 제>

<u>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</u> 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자료</u> 2. <u>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</u> <u>고 등과 관련된 자료</u> 3. <u>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</u> <u>료</u>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--	--